

##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#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4200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박주용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0.05.14.근저당			배당요구종기	2025. 9. 2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이희동	미상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미상	미상	미상	2018.05.04	미상		
<p>&lt;비고&gt;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 <p>지분매각.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# 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42002

-----  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7  
평택소사별호반베르디움  
1108동  
[도로명주소]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116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5층 공동주택(아파트)

지하 1층 181.143㎡  
지상 1층 281.694㎡  
지상 2층 262.7934㎡  
지상 3층 445.8216㎡  
지상 4층 445.8216㎡  
지상 5층 445.8216㎡  
지상 6층 445.8216㎡  
지상 7층 445.8216㎡  
지상 8층 445.8216㎡  
지상 9층 445.8216㎡  
지상 10층 445.8216㎡  
지상 11층 445.8216㎡  
지상 12층 445.8216㎡  
지상 13층 445.8216㎡  
지상 14층 445.8216㎡  
지상 15층 445.8216㎡  
지상 16층 445.8216㎡  
지상 17층 445.8216㎡  
지상 18층 445.8216㎡  
지상 19층 445.8216㎡  
지상 20층 445.8216㎡  
지상 21층 445.8216㎡  
지상 22층 445.8216㎡  
지상 23층 445.8216㎡  
지상 24층 445.8216㎡  
지상 25층 445.8216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6층602호  
철근콘크리트구조 84.2227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7  
대 43964.9㎡

-----

-----  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  
대지권의비율 : 1. 43,964.9분의 58.7866

매각지분 갑구 2번 이양희 지분 2분의 1 전부

감정평가액		210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2.24	210,000,000	21,000,000
2회	2026.04.07	147,000,000	14,700,000
3회	2026.05.12	102,900,000	10,290,000
4회	2026.07.07	72,030,000	7,203,000

-----  
지분매각.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(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)  
-----